

## 윤리강령

제정 2012.06.01.

개정 2025.06.09.

청강문화산업대학교는 건학이념인 '자연사랑, 인간사랑, 문화사랑'의 이념 위에 사람을 사랑하며 참사람을 키워내는 숭고한 교육이념을 실천하고자 설립한 학교입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는 설립자의 교육이념을 변함없이 따르며 창조와 나눔의 정신을 더해 참사람을 실천하는 문화산업 인재를 배출할 것입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구성원은 대학 본연의 사명과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며,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의식 수준을 높이고,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 목표를 되새기며, 규정과 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하고자 합니다.

### - 교육 목표 -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교직원은

**첫째,** 사랑을 가지고 익힌 지식과 기술을 남을 위하여 쓰는 인간을 기른다.

**둘째,** 믿음을 가지고 성실로써 스스로를 키워 나가는 인간을 기른다.

**셋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큰 뜻을 이루는 인간을 기른다.

**넷째,**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사고로 꿈과 희망에 가득 찬 인간을 기른다.

**다섯째,** 창의성 있는 교육으로 열린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인간을 기른다.

- 강령 -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교직원은

**첫째,**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 및 지도하여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여 사회에 기여하도록 한다

**둘째,**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의와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헌신의 참의미를 구현하여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표본이 된다.

**셋째,** 교육자의 양식과 품위를 가지고, 공정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넷째,**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품위를 지킨다.

**다섯째,** 직무 외의 생활에서도 모범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대학의 명예와 위상 제고에 노력한다.

- 윤리 규정 (별첨) -

# 윤리규정

제정 2012.06.01.

개정 2025.06.09.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고 한다)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관과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대학의 건학이념과 설립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윤리적 도덕성을 확립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의 교원, 직원 및 기타 대학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2장 일반적 윤리

**제3조(교육 및 지도의무)** 교직원은 대학의 건학이념과 설립목표를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 및 지도하여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여 개인의 꿈을 실현시키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4조(상호존중의무와 차별금지)** ① 교직원은 동료 교직원 및 학생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

② 교직원은 동료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해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겸직금지)** ① 교직원은 대학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총장의 허가를 얻어 타기관의 비상근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교육과 연구의 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

**제6조(성폭행 및 성희롱 금지)** ① 교직원은 상호간, 또는 학생에 대하여 성폭행 및 성희롱, 기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상호간, 또는 학생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업무·고용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7조(규정준수의무)** 교직원은 학교법인 정관 및 대학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타인을 알선하고 청탁하여 다른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회통념상의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관한 입찰절차의 진행,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대학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교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학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연구 부정행위 금지)** 교직원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정보관리)** ① 교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4장 위반 시 조치

**제11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① 교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지체 없이 교내 관련 행정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총장의 요청을 받은 행정부서는 신고사항의 처리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 필요시 총장은 해당 교직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은 학교법인 청강학원 정관 제56조 내지 제64조 및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며, 직원은 일반직원재심위원회규칙을 준용한다.

④ 총장은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규정의 적용 및 시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대학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